

현장실습학기제운영규정

(규정명 변경: 2017.06.27.,2022.01.19.)

2012.05.01.제정	2012.08.01.일부개정	2012.11.20.일부개정	2016.06.16.일부개정
2016.09.22.일부개정	2017.06.27.일부개정	2018.05.24.일부개정	2018.07.01.일부개정
2019.02.11.일부개정	2019.12.09.일부개정	2020.02.26.일부개정	2020.12.01.일부개정
2021.06.01.일부개정	2022.01.19.일부개정	2022.03.18.일부개정	2023.04.21.일부개정
2024.03.01.일부개정			

<학사관리팀>

제1조(목적)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22조 및 동명대학교 「학칙」 제37조에 규정한 수업 방법 중 현장실습수업(이하 "실습학기제"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19.)

② 본 규정에서 누락된 사항은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22.01.19.)

제2조(정의)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01.19.)

1. “현장실습수업”이란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기간 동안 현장실습기관에서 실무교육 및 실습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으로 교육부 고시 제 2021-19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표준현장실습과 자율현장실습으로 운영된다.
2.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산업체 등 학생의 실무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국내·외 기관을 말한다.
3. “현장실습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이란 학점인정 및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제공받기 위해 현장실습(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을 말한다.
4.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지원비"라 한다)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실습학기제 운영 및 수행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5. “현장실습지원센터”란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2조의 2(적용제외) 별도 법령 등에서 특정 전공에 대해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실습형태의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운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별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따로 정하여 운영한다.

1.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실습,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실습,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현장실습 등 별도법령에 따른 의무실습 등
2.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료과정 운영학교 등의 인증절차에 필

요한 의무실습 교육과정 및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따른 보건·의료 인력의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시험과 자격요건 충족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실습 등

[본 조 신설 2022.01.19.]

제3조(교육과정 편성 및 개설) ① 실습학기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은 <별표1> ‘**실습학기제 이수기준**’, <별표2>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이수기준**’과 같다.(개정 2018.5.24., 2019.12.9., 2022.01.19., 2023.04.21., **2024.3.1.**)

② 실습학기제 교육과정의 수업시간은 주단위로 표시하고 전일제(1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하)로 4주 이상 연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실습학기제Ⅲ은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 운영된다. (개정 2018.5.24., 2022.01.19.)

③ 표준현장실습은 산학협력법 제11조의 3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으로 직무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전체 실습기간의 비율 중 100분의 10이상 25이하인 경우로 하고,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는 표준현장실습 기준을 따라 운영한다.(개정 2022.01.19., 2023.04.21., **2024.3.1.**)

④ 자율현장실습은 표준현장실습의 실습학기제 운영기준과 달리 학교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장실습으로 운영기간 및 시간 기준은 표준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범위 내에서 학교와 실습기간 간 협의하에 결정하며 직무관련 교육시간의 비율이 전체 실습기간의 비율중 100분의 25를 넘도록 한다.(신설 2022.01.19.)

⑤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의 운영은 학기 개강 전에 시작하거나 학기 종강 이후에 종료할 수 있으며, 학기 개강 전에 시작하는 경우는 해당 학기의 수강신청 및 등록을 완료한 이후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3.04.21., **2024.3.1.**)

⑥ <별표1>의 ‘**Work2Learn학기제**’와 <별표2>의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는 방학과 학기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04.21., **2024.3.1.**)

제3조의2(실습학기제 운영기준) (삭제 2022.01.19.)

제3조의3(실습학기제 운영원칙 등) ① 실습학기제 운영원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습기관에서는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 양성 기회로 활용한다.
 2. 학생은 실습학기제 참여를 통해 관련 산업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기술·태도 등의 습득을 통해 직무능력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한다.
 3. 학교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공할 수 없는 전공 관련 현장 직무교육을 실현하고, 산업 현장의 직무 요구사항 및 변화를 학교 교육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
- ② 실습학기제는 해당 전공분야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학생 전공과 관련되게 운영한다.
 - ③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학기제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과할 수 없다.
 - ④ 실습학기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실습학기제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 및 교과목 개설
 2. 실습학기제 교과목 수강신청, 등록절차 및 이수과정

3. 실습기관 현장교육담당자 지정 및 실습학기제 운영 계획
 4. 실습학기제 운영에 대한 점검 계획
 5. 출결 및 평가 관리 등 학점 부여 근거와 기준
 6. 그 밖에 실습학기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⑤ 실습학기제는 제4항에 따라 학생의 수강신청 등이 완료된 이후 실시되어야 하며, 실습학기제가 실시된 해당 학기의 학점으로 주어야 한다.
- ⑥ 실습학기제 운영기준 및 시간 등의 세부사항은 「현장실습운영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 [본 조 신설 2022.01.19.]

제4조(실습기관 및 협약체결) ① 실습기관은 해당 전공의 실습학기제에 필요한 교육 또는 실습 계획을 갖추고 실습학기제 과정 중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로서 본 대학교와 실습학기제 협약체결이 가능한 업체 또는 기관으로 선정하며,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적합하게 설립된 업체 중 5인 이상의 산업체 또는 총장이 인정하는 업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3.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 등
 4. 현장실습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및 각 학(부)장이 실습학기제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또는 기관
- ② 실습학기제 협약은 실습기관, 총장 또는 센터장 명의로 체결하며,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협약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9.)
- ③ 실습기관은 학생지도를 위하여 현장교육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5조(이수제한) ① 실습학기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이수한다.(개정 2021.11.00., 2022.01.19., 2023.04.21., **2024.3.1.**)

1. ‘실습학기제 I, II, III’는 재학 중 총 3회에 한하여 **이수** 가능하다.
 2. ‘장기실습학기제 I, II’는 재학 중 각 1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장기실습학기제 II’는 ‘장기실습학기제 I’을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3.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는 재학 중 각 1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으나,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 I, II’**는 둘 중 하나만 이수 가능하고,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 III’**는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 I, II, VI’**를 이수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다.
 4. **‘Work2Learn학기제’**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② 실습학기제 과정 수행 중에는 다른 교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 다만, **원격수업 및 ‘Work2Learn학기제’를 이수하는 학생의 일부 교과**는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8.07.01., 2020.2.26., 2021.6.1., **2024.3.1.**)
- ③ 실습학기제는 졸업 1개월 전까지 종료하여야 한다.
- ④ 제3조 1항의 **<별표1>**의 ‘장기실습학기제 I’와 **<별표2>**의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 I, II’**의 교차이수는 불허한다.(개정 2023.04.21., **2024.3.1.**)

제6조(신청자격 및 절차) ① 실습학기제 과정의 신청 자격은 제3조 제1항의 실습대상과 같다.

② 해외실습학기제 과정은 제1항의 자격 이외에 해당국 언어사용이 가능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이어야 한다.

③ 실습학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기간 내에 실습학기제 참여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를 소속 학과(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실습학기제보고서의 작성) ① 실습학기제에 참가한 학생은 실습학기제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습학기제 지도교수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2.9.)

② 제1항의 실습학기제 지도교수의 검토가 없는 실습학기제보고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19.12.9.)

제8조(등록) ① 실습학기제 신청자는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 실습학기제 기간 중 자퇴, 휴학 등의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기 납부한 등록금은 학칙과 관계법령에 따라 환불 또는 대체인정 받을 수 있다. 다만, 'Work2Learn학기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9.12.9., **2024.3.1.**)

제9조(실습학기제 지도) ① 실습학기제 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학생 출근상황, 실습기관의 실습교육상황 등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실습학기제 지도교수에게는 실습학기제 지도방문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실습학기제 지도교수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의 2(학생 안전 및 보호조치) ① 학교에서는 실습학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한다.

② 실습기관에서는 실습학기제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습기관에서는 산재보험 가입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입 후 1주일 이내에 학교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함께 학교에서는 실습학기제 중 상해 등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손해 및 배상책임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표준 현장실습은 1일 기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과 1주 기준 1일 이상의 휴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간과 휴일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 1주 기준 1일의 휴일과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휴일(공휴일 포함)로 한다.

⑤ 자율 현장실습의 경우 실습 시간 및 기간을 고려하여 실습기관과 휴게 및 휴일에 관하여 협의하여 실시한다.

⑥ 실습학기제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소요 일수를 제4항 및 제5항의 휴일 외 추가적인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한다.

1. 예비군 훈련 등의 공적 의무 수행일
2.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결혼, 사망 등의 경조사일
3.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일 등. 다만,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실습수행 목적 달성 및 지속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습기관, 학생, 학교 간 협의를 통하여 중단 및 복교 등의 조치 실시
- ⑦ 기계작동 및 실험기반 실습 등의 경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실습기관의 현장교육담당자의 지도 및 참관 하에 실시되어야 한다.
- ⑧ 제17조에 따른 평가 시 실습기관에서는 자체 기준 및 규정 등으로 학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징계,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다.
- ⑨ 실습학기제에 참여한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학교에 관련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해당 학교는 신속히 관련 사항을 확인 후 실습기관을 대상으로 시정 등을 요청하거나, 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 복교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에서 이 고시에 따른 실습학기제 인정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주거나 지시·강요하는 경우
 2. 실습시간 및 기간 등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기준 미만으로 지급하는 경우
 4. 산업 안전·보건과 위생, 성희롱 및 재해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관련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실습학기제 운영 조건의 임의 변경,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 등
- ⑩ 학교에서는 실습학기제 운영 중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 국가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에 따라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일시 중단 또는 복교, 휴학 등 학생 안전 및 보호에 우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중단의 경우 실습학기제의 지속 운영 및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는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복교에 따른 중단 시 관련 규정에 따른 학점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당 실습학기제 교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점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대체실습 교과 등의 수강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거나, 학생이 희망할 경우 휴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⑪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 이수 중 복교에 따른 중단으로 학점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필요에 따라 복교 조치된 학생이 이수가능한 집중이수식 수업을 개설하거나, 학생이 희망하는 원격강좌를 이수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K-Mooc강좌 등을 이수하도록 지도하여 학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3.1.)

[조 전면 개정 2023.04.21.]

제9조의3(재택실습) ① 국가재난 발생 시, 실습학기제 지속 운영 필요에 대한 실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실습기관의 운영계획에 따른 실습기간(또는 일수)의 100분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기간(또는 일수) 범위에서 재택실습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재택실습 기간은 실습학기제의 출석일수로 인정한다.
2. 재택실습 실시 시 학교에서는 실습기관의 재택실습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실습기관의 요청 서류를 갖추고, 학생의 동의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택실습을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습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또는 근무) 여건과 동일한 상황에서 실습이 가능한 직무인 경우
2. 실습기관이 소속 직원과 동일한 재택근무 여건을 학생에게 제공하는 경우
3. 학생, 실습기관, 학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본 조 신설 2022.01.19.]

제9조의4(대체실습 교과목 운영) 재난 상황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영상 또는 콘텐츠 활용 교육, 교내실습 등으로 바꿔 운영하고자 할 경우 집중수업 형태의 별도 대체실습 교과목 수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학교에서는 실습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실습학기제 중단 및 학생의 실습학기제 수강취소 등의 조치 후 운영하여야 하며, 대체실습을 실습학기제 교과목의 운영기간 및 학점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본 조 신설 2022.01.19.]

제10조(결과보고 및 학점인정) ① 실습학기제 종료 후 학생은 지체없이 실습학기제보고서를 실습학기제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② 실습학기제 지도교수는 실습학기제 종료 후 3일 이내에 실습학기제보고서, 실습학기제 출석부, 실습학기제 지도교수 평가서, 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를 검토 및 작성하고 학장을 경유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③ 센터장은 실습학기제 보고서 검토 후 교무처장에 학점인정을 요청한다. (개정 2018.7.1., 2019.12.9., 2021.6.1.)

④ 실습학기제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제3조 제1항의 <별표1, 2>에 따라 해당 이수학기의 학점으로 최대 40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전공으로는 25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공필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정은 최초 이수한 '실습학기제 I'이다.(개정 2019.12.9., 2022.3.18., 2023.04.21., 2024.3.1.)

⑤ 실습학기제 과정의 성적평가는 이수자는 P(Pass), 미이수자는 NP(Non-Pass)로 평가한다. (개정 2018.5.24.)

⑥ 실습기간의 3분의 2가 경과된 후 사고, 질병, 병역, 천재지변 등 기타 실습학생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습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지도교수 지도에 따라 잔여기간을 보고서로 대체하여 학점인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9.)

⑦ 실습학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실습주수 4주 기준 4일 이상 결석 한 경우에는 전체 실습기간 중 실습시간을 충족하였더라도 학점인정을 하지 않으며, 출석(출근)에 관한 세부 운영사항은 현장실습운영관리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1.)

제11조(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한 각종 서식 및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현장실습 수업과 해외실습학기제 세부 운영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 이전의 「현장실습수업(인턴쉽)운영규정」은 폐지한다.
2. 이 규정은 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로 신청하는 현장실습에 관하여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인턴쉽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폐지되는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0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0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실습학기제 참여 신청서 (삭제 2019.12.9.)

<별지 제2호 서식> 자기소개서 (삭제 2019.12.9.)

<별지 제3호 서식> 실습학기제 참여신청서 (삭제 2019.12.9.)

<별지 제3-1호 서식> 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삭제 2019.12.9.)

<별지 제4호 서식> 실습학기제 신청자 명부 (삭제 2019.12.9.)

<별지 제5호 서식> 실습학기제협약서 (개정 2019.02.11.) (삭제 2019.12.9.)

<별지 제6호 서식> 실습학기제 보고서(학생작성용) (삭제 2019.12.9.)

- <별지 제6-1호 서식> 실습학기제 주간보고서 (삭제 2019.12.9.)
- <별지 제6-2호 서식> 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 (삭제 2019.12.9.)
- <별지 제6-3호 서식> 실습학기제 종합보고서 (삭제 2019.12.9.)
- <별지 제6-4호 서식> 출석부 (삭제 2019.12.9.)
- <별지 제7호 서식> 실습기관 평가서 (삭제 2019.12.9.)
- <별지 제8호 서식> 실습학기제 지도평가서 (삭제 2019.12.9.)
- <별지 제9호 서식> 실습기관 방문지도 보고서 (삭제 2019.12.9.)
- <별지 제10호 서식> 실습학기제 참여학생 설문지 (삭제 2019.12.9.)
- <별지 제11호 서식> 실습학기제 지도교수 설문지 (삭제 2019.12.9.)
- <별지 제12호 서식> 참여 실습기관 설문지(실습기관용) (삭제 2019.12.9.)
- <별지 제13호 서식> 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섭외내역서 (삭제 2019.12.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전의 <별표2>에 따라 이수한 ‘Work2Learn학기제’ 는 개정된 <별표2> ‘부산시 워털루형실습학기제’를 이수한 것으로 한다.

<별표1> (개정 2022.01.19., 2023.04.21., **2024.3.1.**)

실습학기제 이수기준

교과목	인정 영역	인정 학점	실습주수	실습시간	실습대상	개설학기
실습학기제 I	전공	3학점	4주 이상	120시간이상	3학년 이상	방학 중
실습학기제 II	전공	6학점	8주 이상	240시간이상		
실습학기제 III	전공	3학점	8주이내	100시간이상 112시간이내	3학년 이상	
장기실습학기제 I	전공	16학점	12주 이상	480시간이상	3학년 이상	학기 중
장기실습학기제 II	전공	12학점	12주 이상	360시간이상	4학년 이상	
실습학기제(4+1)	전공	1학점	12주 이상	360시간이상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실습학기제 희망자	
Work2Learn학기제	전공	9학점	12주이상	360시간이상	3학년 이상 3학기제 이수자	3학기제의 실습학기

<별표2> (개정 2022.01.19., 2023.04.21., **2024.3.1.**)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 이수기준

교과목	인정 영역	인정 학점	실습주수	실습시간	실습대상	개설학기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 I	전공	15학점	12주 이상	480시간이상	3학년	학기중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 II	전공	18학점	16주 이상	640시간이상			
부산시위털루형실습학기제 III	전공	15학점	12주이상	480시간이상	4학년	학기중	
부산시위털 루형실습학 기제IV (4+8과제)	부산시위털 루형실습학 기제IV-I	전공	4학점	4주 이상	160시간이상	3학년 이상	방학중
	부산시위털 루형실습학 기제IV-II	전공	8학점	8주 이상	320시간이상	3학년 이상 부산시위털루형 실습학기제IV-I 을 이수한 학생	학기중